#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2018. 4. 17. 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6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4. 16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김인문)

## 가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구립모 랫말데이케어센터의 시설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 O 대상시설

시설명(가칭)	위 치	규 모	정원
구립	도림로 41 (도림동 205-23)	$232.62$ $m^2$	0.1 pd
모랫말데이케어센터	〈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5,6층〉	(70평)	21명

#### O 이용대상

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
-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
- O 서비스 내용
  - 일상생활,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
  -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이동서비스
  -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운영
- 소요예산
  -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
  -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용양급여 지원금(85%)과 이용자 본인부담금 (15%)으로 운영됨

#### O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○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-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(가칭)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는 영등포 구 도영로 41(도림동 205-23)에 위치하고 있으며, 연면적 232.62㎡(70 평),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·야간 보호시설로서
-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자로서,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지 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서비 스.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며
-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3,299명으로 영등포구 인구 전체의 14.5%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또한, 2014년 7월부터 치 매특별등급 신설로 노인요양 등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·야 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은 총 11개소로 구립 8개소, 사설3개소이며 이 중 2 개 구립시설은 얼마 전 2018.4.1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.12월 현재 우리구 거주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등급자가 3,290명으로 이중 2,684명 81.5%만이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아직도 6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향후에는 재가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.

※ 장기요양 수요· 공급 현황(2017.12월 현재)

- 어르신 인구 현황

(단위: 명)

구분	2012년	2014년	2016년	2017년	2020년 (추계)	2025년 (추계)	2030년 (추계)
전체인구	426,876	421,436	406,779	368,550	383,869	375,013	366,958
노인인구 (인구대비%)	45,417 (10.6%)	49,184 (11.6%)	51,186 (12.5%)	53,299 (14.5%)	60,533 (15.7%)	75,113 (20.0%)	88,645 (24.1%)

#### - 장기요양 등급 현황

(단위 : 명)

등급판정	등급 인정자						등급의	판정
신청자	계	1급	2급	3급	4급	5급	A,B,C	탈락자
4,348	3,290	371	469	1,102	1,066	282	195	863

#### - 급여 이용자

(단위 : 명)

노인인구수 요양등급자			시설별 이용자수	미이용자	비고	
エンジナナ	<u> тоон</u> и	합계	시설급역	재가급역	-11 <del>0</del> /1	(이용률)
53,299	3,290	2,684	363	2,321	606	81.5%

#### - 재가 요양서비스 공급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주 • 약간보호	방문요양	방문목욕	방문간호
시설수	173	11	98	65	2
이용인원	2,306	308	1,763	201	34
시설정원		282			

○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는 2018년 7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으며 이곳 시설 은 노후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가복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·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 34조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 당하다고 판단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 366 호

제출연월일: 2018. 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민간위탁 목적

○ 노후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주·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.

## 2. 민간위탁 내용

○ 대상시설

시설명(가칭)	위 치	규 모	정원
구립	도영로 41 (도림동 205-23)	232.62m²	21
모랫말데이케어센터	〈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5,6층〉	(70평)	

## ○ 이용대상

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
-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

## ○ 서비스 내용

- 취미, 오락, 운동, 언어·작업·물리치료적 훈련 등 일상생활, 일상동작 훈련 서비스
-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이동서비스
-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## 3. 민간위탁 추진 일정

○ 2018. 4월: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

○ 2018. 4월: 일상감사 의뢰

○ 2018. 5월: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

○ 2018. 6월: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○ 2018. 6월: 위·수탁 협약체결

○ 2018. 7월: 위·수탁 사무 인수인계

### 4. 민간위탁 소요 예산

○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원금(85%)과 이용자 본인부담금 (15%)으로 운영됨.

## 5.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
-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- 후원,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원 개발·연계가 용이하여 나눔 복지 확산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
-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력운영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,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

## 6. 법적근거
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등)
- 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○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
- ○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